

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(안)

2005. 4. 15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4월 7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1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(2005. 4. 15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도 봉 주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“2005년도 중기재정계획”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4년도에 창전동 쌍용제2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창전동 신청사를 3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쌍용제1지역주택조합과 상호교환으로 부지를 확보함.

○ 창전동 舊청사 부지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창전동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부지와와 상호교환으로 확보된 부지 1,098㎡(332평)에 연면적 3,358.10㎡(1,015.82평), 지하1층~지상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동청사를 2007년까지 건립하고자 함.

○ 복합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7,070백만원중 구비 5,533백만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후 년차별로 편성하며, 시비 1,247백만원은 2005년 시 재정투·융자심사의결 후 2006년에 지원받고자함.

구분			중기재정계획 (2005-2007)	구비예산	시비예산	시비예산 비율	비고
계			3,358.10	7,070,000			
1	건물	마포구 창전동 145-15외8필지	3,358.10	7,070,000	2007년도	복합청사 건	마포구 성산동 275-3

※ 동청사 부지 확보면적 : 1,098㎡(교환부지 837㎡ + 도로부지 261㎡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박 관 수)

○ 동 건은 2003년 4월 1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(안)으로 의결되어 창전동 구청사(창전동145-3) 부지 910㎡(약275.7坪)를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(창전동145-1외 5필지) 대지 837㎡(약 253坪)와 상호 교환하고, 창전동246-12외 2필지 도로 261㎡(약 79坪)는 교환 부지내에 위치한 도로로써 용도 폐지후 교환부지 830㎡와 합병한 1,098㎡(332평)규모의 창전동 신청사 부지는 2003년11월에 확보되었음.

○ 확보된 부지1,098㎡(332평)에 건립예정인 창전동 복합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3,358.1㎡(1015.82평), 지하1층 지상6층으로 동청사, 주민자치센터, 공공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하는 것으로 건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70억7천만원이 되겠으나 이중 구비는 55억3,300만원, 시비는 12억4,700만원이 되겠으며, 2005년도 예산에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로 22억3,336만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,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0 질의요지(신봉현 위원) : 동 청사부지는 253평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도로부지 79평을 포함하여 대형으로 짓는 이유는?

0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4~6층은 공공도서관, 3층 일부는 여성교실로 사용할 예정임.

0 질의요지(오윤수 위원) : 도서관을 크게 짓는 이유는?

0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관내에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도서관이 없으므로 열악한 교육여건 및 문화수준 등을 높이고자함.

0 질의요지(남두희 위원) : 각동 청사의 크기가 달라 유지관리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원방법은?

0 답변요지(김종선 주민자치과장) : 면적 등을 감안하고 전가·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은 고지하는대로 지원하고 있음.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200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(案)

의안
번호

제출일자: 2005.04.
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,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에 이루어질 중요재산의 취득,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“2005년도 중기재정계획”에 의거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내역으로 2004년도에 장전동 쌍용제2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에 동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장전동 신청사를 360평 규모로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쌍용제1지역주택조합과 상호교환으로 부지를 확보함
- 장전동 舊청사 부지와 지하철6호선 광흥창역 입구에 위치한 장전동 쌍용제1지역주택조합 부지와 의 상호교환으로 확보된 부지 1,098㎡(332평)에 연면적 3,358.10㎡(1,015.82평), 지하1층~지상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동청사를 2007년까지 건립하고자 함
- 복합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7,070백만원중 구비 5,533백만원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후 년차별로 편성하며, 시비 1,247백만원은 2005년 시 재정투·융자심사의결후 2006년에 지원받고자 함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 가액 (단위:천원)	취 득 시 기	취 득 사 유	취득재산 소유자 (주 소, 성 명)	비고
	지목	소재지	면적(㎡)					
계			3,358.10	7,070,000				
1	전물	마포구 장전동 145-15외 8필지	3,358.10	7,070,000	2007년도	복합청사 전 립	○마포구 성산동 275-3	

※ 동청사 부지 확보면적 : 1,098㎡ (교환부지 837㎡ + 도로부지 261㎡)

3. 근 거

- 지방재정법(개정:2001.1.29,법률:제6400호) 제77조제1항
- 지방자치법(개정:2002.3.25,법률:제6669호) 제35조제1항제6호
- 지방재정법시행령(개정:2002.12.31,대통령령:제17871호) 제84조제2항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(개정:2002.10.5,조례:제521호) 제36조,제37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(개정:2001.3.31,규칙:제354호) 제29조

위 치 도

